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신설 2024. 5. 27.>

맹견의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(제12조의5제4항 관련)

1. 격리조치 기준

가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맹견을 생포·격리해야 한다.

- 1)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격리해야 한다.
- 2) 1)의 방법으로 맹견을 생포·격리하지 못하거나 1)의 방법으로 생포·격리하였으나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마취약을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바람총(Blow Gun) 등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,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발사해야 한다.

나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맹견의 효율적인 생포·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·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
- 2)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
- 3)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
- 4)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
- 5)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

2.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

가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호가목에 따라 생포·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해야 한다.

나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·도 조례나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.

다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라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

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종료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건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.